

혐의보도의 온라인 게시 허용성¹⁾

1. 개요

연방헌법재판소는 보도기록의 삭제 청구를 배척하는 민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장기간 인터넷 게재의 허용성과 혐의상태의 보도기사에 관한 기준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동 재판소는 본래 보도기사의 허용성이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도기록의 허용성에 결정적인 요소이며, 이는 통상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게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래 혐의에 대한 보도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이 보도 역시 장기간 게재되는데, 예외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또는 도중에 사정이 변경되어 본래 정당하였던 혐의 보도가 인터넷에 계속 그대로 게재된다면 당사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 삭제 또는 사후보완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본안 회부 거부결정²⁾이 내려졌다.

2. 사실관계

심판청구인은 이의가 제기된 기사가 보도될 당시 기업 자문을 업으로 하였으며, 여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면서 특히 지멘스사에서 천만유로 대의 대가를 받았다. 2007년 영어 일간신문의 유럽판에, 당시 공개된 지멘스

1) 2020년 7월 7일자 사건번호 1BvR 146/17

2) 독일 헌법재판소법 제93a조

(1) 헌법소원에는 심판회부결정이 필요하다.

(2) 다음의 헌법소원은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a) 헌법소원에 원칙적인 헌법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b) 제90조 제1항에 열거된 권리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경우: 본안재판이 거부되면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에게 특히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법 제90조

(1) 공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 또는 기본법 제20조 제4항(저항권)이나 제33조(공무담임권), 제38조(선거권), 제101조(법률에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제103조(법적 청문의 권리,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제104조(자유박탈시의 권리보호)의 내용이 되는 권리가 침해된 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사의 간부직원에 대한 부패조사 와중에, 심판청구인의 사례를 들어 외국에서 계약을 따내는 경우 자문인의 역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 기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뇌물자금이 자문인을 통해 복잡한 경로를 거쳐 분배되는 과정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심판청구인에게 부담이 되는,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그 지멘스 간부직원의 진술을 게재하였다. 덧붙여, 지멘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심판청구인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심판청구인은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부패사례를 신고하였고,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소환을 편히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심판청구인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그 기사는 현재 법원의 부분 인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된 형태로 여전히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민사법원은 심판청구인이 지멘스사를 위하여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널리 뇌물자금을 돌렸다는 혐의와 관련한 심판청구인의 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공개 당시 적법한 혐의보도였으며, 온라인 기록으로 계속 게재한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사적인 사건을 개별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이며, 백만 유로대의 뇌물에 관한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제한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3. 결정주문

이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

4. 결정이유

연방헌법재판소는 혐의상태에 관해 보도한 기사의 사례에서 잇힐 권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의 장기간 게시의 허용기준을 실시하였다.

(1) 보도기사 본래의 허용성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의 허용

성에 관한 결정적 요소이며, 통상 수정하지 않고 공개 제공한다면 장기적인 게재도 정당하다. 이 경우 언론사는 첫 보도를 할 때에 이미 자신에게 적용되는 척도를 준수하였으므로 새로이 그 기사를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래 적법한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하는 조치는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특히 중대할 예외적인 경우에 수인할 수 있다.

(2)

a) 삭제청구의 대상이 혐의기사인 경우 고도의 공익적 의미를 갖는 혐의를 적법하게 개별적으로 밝혀서 탐사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임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능성과 개연성, 그리고 혐의상태는 사회적 사실이며, 이를 규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표지이자 자유이며 임무이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공익의 영역일 수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둔 개연성 인식은 장기적으로 개인적·사회적·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규명되기 전의 혐의상태가 공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수사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개시되지 않았다 하여 언론의 공표와 게재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b) 반면에 혐의보도를 통해 당사자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해명되었을 수도 있는 혐의에 노출되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인격권 제한이다.

c) 이러한 이유에서 혐의보도에 대한 본래의 허용성은 엄격한 법적 척도의 지배를 받는다. 즉 혐의기사는 그 보도 당시에 고도의 보도이익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입장표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가 반론을 하고, 선입견을 초래하는 혐의보도를 금지함으로써, 기사에서는 혐의가 해명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그칠 것을 보장한다.

(3) 심판대상인 결정은 이러한 척도를 충족한다. 원심법원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도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황변화에 달려 있으며, 금지청구의 시점에 서로 충돌하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이익의 형량

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래의 공개허용성이 결정적인 판단요소라고 하는 입장은 옳다. 이와 별도로 기사에 서술된 경위와 여기서 드러나는 혐의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부정을 구체적인 예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화하는 보도는 정당하다. 문제의 기사가 심판청구인의 이름 전부로 검색한다 하여도 선호도가 별로 높지 않다. 여러 검색엔진에서 그 이름으로 검색한다 하여도 첫 50개의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으며,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엔진을 통하여도 두 번째 페이지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의식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검색한 제3자가 이 기사를 접할 가능성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며, “잊힐 권리 I” 사건³⁾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보도된 혐의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과오(過誤)가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면, 통상 이를 저지른 사람의 생활에 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잊힐 것을 기대하게 된다. 반면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매개로 하는 알 권리 역시 사회적 의미가 있으므로, 양자는 충돌한다. 더구나 망각을 모르는 기억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보도가 기록되는 경우 그 충돌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상황에 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련의 설시를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11월 6일자 사건번호 1 BvR 16/1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년 제3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1호)의 결정에서는 수십 년 전의 범죄(살인)에 관한 보도의 인터넷 게재 허용성에 관해 다루었으며, 이번에는 범죄에 이르지 않은 혐의에 관한 보도의 인터넷 게재(2020년 7월 7일자 사건번호 1BvR 146/17)와 과거의 비행 및 나쁜 인상을 줄 만한 성향의 보도(2020년 6월 23일자 사건번호 1 BvR 1240/14)에 관한 사건이다. 여기서의 전자의 사건, 즉 과거의 범죄혐의를 인터넷으로 장기간 소환할 가능성에 관하여 독일연방헌

3) 밑에서 소개하는 2019년 11월 6일자 사건번호 1 BvR 16/1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0년 제3호, 세계헌법재판 조사보고 제41호)의 결정이 추후 “잊힐 권리 I”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준을 살펴보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도의 이익은 시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무조건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衡量하여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심판청구인의 혐의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비중을 두었다. “잊힐 권리 I” 사건과의 차이는 결국 인터넷 검색 결과로 볼 때 그 이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는 점이다.